

## UCC 저작권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공정이용(Fair Use)'법리

기술정책팀 최 원 석 연구원  
(neoein@socop.or.kr)

### I. 서론

참여, 공유, 개방으로 특징지어지는 Web 2.0시대의 콘텐츠 시장의 최대 트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였다. UCC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①이용자에 의해(User) ②손수 제작된(Created) ③저작물(Contents)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제작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보급이 인터넷 누리꾼의 자아표출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콘텐츠 시장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했던 이용자가 값싼 콘텐츠 제작물의 공급과 네트워크의 대중적 보급을 통해 문화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UCC는 콘텐츠 소비의 개념 또한 변화시켰는데, 콘텐츠를 단순히 구매하여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콘텐츠를 편집, 수정, 보완하고 거기에 창조적 개성을 더하여 2차적 작성물을 만들거나 새로운 콘텐츠로 창조하는 것까지 콘텐츠 소비의 영역에 포괄됨으로써 소비와 창조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생산자-소비자 모델을 대변하는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단순 이용하는 수동적 수용체였으나, 이제는 정보를 직접 메이킹하여 이슈화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클라이언트가 재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1)</sup>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의 포털 및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앞다투어 UCC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였는데, 대표적 사이트로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들 수 있다. 구글이 이 사이트를 16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으로 매입함으로써 UCC는 IT업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UCC를 활용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포털업체들이 UCC 관련 채널을 별도로 만들고 전문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우라·픽스카우·판도라 TV와 같은 UCC 전문사이트들이 한국의 유튜브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인터넷 이슈리포트, 전자신문사 161면.

한편, UCC가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킬러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주목받으며, 영리적 목적의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명예훼손, 폭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도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UCC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에 UCC 관련 사이트들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실패한 탓도 있지만, 저작권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참여한 대립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UCC 저작권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법리들의 취지,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함으로써 UCC 저작권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저작권 분쟁 대상으로서의 UCC

UCC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로 지칭되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면에서는 여타 콘텐츠와 유사하게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재가 융합된 UCC인 경우에도 멀티미디어 시대 콘텐츠는 대부분 컨버전스 형태를 띠는 점을 감안하면 형태면에서는 그다지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다만, UCC는 제작의 주체가 전문적 창작자가 아닌 일반 인터넷 이용자이고,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창조적 개성을 담은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기보다는 타인의 저작물을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작주체와 방식에서 여타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UCC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UCC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추어제작자가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에 원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원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UCC가 제작·복제·전송·배포되는 단계에서 UCC제작자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동영상사이트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UCC를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작한 UCC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기를 원하는 누리꾼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

2) 윤종수, UCC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2면

UCC 제작에 이용되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정도에 따라 UCC를 분류해 보면 타인의 콘텐츠를 실질적인 개변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경우와 자신의 창조적 개성을 더하여 2차적 저작물로 창작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권한 없이 창작성을 가미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원본대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이며 이러한 유형에서는 특별히 UCC를 기타 저작권 침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편곡·변형·영상제작하여 2차적 제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더한 UCC의 저작권 문제는 UCC의 창작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UCC이용자의 82.7%는 동영상 UCC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영상·애니메이션 UCC이용자는 주로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광고를 편집한 UCC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인이 직접 찍거나 제작한 동영상·애니메이션 UCC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sup>3)</sup>

따라서, UCC 제작주체, 제작형태 및 이용빈도에 비추어 보면, UCC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UCC는 TV프로그램·영화·광고 등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UCC제작자의 창의성을 부가한 동영상 UCC라는 것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활용한 동영상 UCC와 개인 제작 동영상 UCC의 저작권 해결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 Ⅲ. UCC저작권 해결을 위한 법리

UCC저작권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법리적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제한적으로 저작물의 UCC활용을 허락하는 이용허락, 둘째,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저작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저작권시스템, 셋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 중 첫 번째 제한적 이용허락 법리는 저작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제한적 조건과 범위에서 UCC 제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 UCC이용실태조사, 13면~15면

4) 윤종수, UCC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3면

즉, UCC를 원저작자가 허락한 사이트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로 퍼가거나 링크하는 것을 금지하여 UCC의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정보공유가 핵심 키워드인 인터넷 하에서 UCC를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저작자에게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UCC제작자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동의하기 힘든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 저작권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법리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정신적 소유권 개념으로서의 배타적·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침해한 자는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북유럽 국가 4개국<sup>5)</sup>이 채택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집중관리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는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배타적 지배권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체계와는 조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UCC제작자가 창작에 활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은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일반인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간소한 절차로 일정액의 금액만을 납부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UCC저작권 해결을 위한 솔깃한 법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쟁점의 중심에 있는 방송프로그램·영화·광고를 편집한 2차적 창작물을 창작하려는 UCC 제작자가 일일이 방송국·영화사·기업체를 찾아다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 법리는 현재 저작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대륙법적 저작권법 체계로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전유하며 이러한 배타적 저작권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 법리는 우리나라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개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상황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5)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제301면

셋째로, 저작권 규제 시스템의 현존 틀을 유지한 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법리로서 대표적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공정이용(Fair Use)이 있다. 이 외에 저작권법의 재산권 제한 사유 확대를 통해 저작권 해결을 도모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법률해석의 원칙상 어의의 한계를 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UCC저작권 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이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CCL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네 가지 이용조건을 조합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제도이다.

CCL을 통하여 UCC 제작자는 타인의 콘텐츠 이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CCL이 부착된 콘텐츠는 비영리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 없이 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L의 활성화는 UCC 유통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전면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원저작물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에 의하여 제작된 UCC일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이 CCL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송·영화·광고 등을 제작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UCC제작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을 붙여 유통시킬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끝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는 UCC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사유에 한하여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이른바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이용은 원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서 미국의 경우 1976년 저작권법 개정시 성문화화하기에 이르렀다.<sup>7)</sup> 미국은 저작권 제한의 일반원칙으로서 공정이용 법리를 통하여 명문상 저작권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성질, ③그 저작물 전체와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양과 내용, ④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4가지를 기준으로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 법리는 콘텐츠 이용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발달과 컨버전스가 진행됨에 따라 콘텐츠 이용형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콘텐츠 이용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콘텐츠저작권자와 이

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351면

용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을 통하여 법령상 새로운 제한사유를 마련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이용 법리가 UCC저작권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일부 포털이나 UCC사이트가 주장한 ‘인용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판도라TV에서는 방송·영화·광고 콘텐츠의 UCC제작에의 활용을 위해 5분 이내의 인용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저작권제한사유로 인정되는 ‘인용’을 확대하여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나, 저작권법 제28조는 적법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를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용저작물이 종(從)이 되고 피인용저작물이 주(主)로 인식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 일반의 통념에 의하여 공정한 것으로 승인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인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UCC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수익모델의 대상으로 영리성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고, UCC 제작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인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도라 TV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으며 결국 ‘인용권’에 관한 논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동영상 UCC의 69.5%가 TV프로그램의 변형·편집물이며, 53.8%가 영화의 변형·편집물임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방송·영화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UCC제작의 주체·목적·방식이나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 등을 한정하여 인용하는 것을 적법한 이용으로 승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 ‘인용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에 따르면 네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이용’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흔히 UCC제작의 주체로 많이 이용되는 패러디조차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사회 풍자에 열성적인 누리꾼들은 사회적·시대적·문화적·정치적 상황을 풍자하기 위하여 기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패러디가 개성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커다란 주목을 끌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패러디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한규정으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언급될 뿐인데, 원저작물을 매개로 사회상황에 대한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한 매개패러디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한 이용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원도 ‘컴배콤’사건에서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sup>8)</sup>판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패러디 UCC를 제작하려는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탐색하여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이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저작물의 수요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패러디 UCC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하여 4가지 기준에 따라 패러디를 저작권 제한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공정이용’법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방송·영화·광고를 편집하여 제작한 UCC 이외에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영상 UCC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이다. UCC 제작자는 어느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소재와 주제, 제작방식, 장소가 천차만별일 수 있겠으나,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던 임정현 ‘캐논변주곡’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제작 UCC에도 타인의 음악이나 무용 같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나 무용이 타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물로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에서 노래나 춤을 연습하면서 촬영한 장면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민사책임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것은 일응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2007년 6월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주부가 자신의 아이가 춤추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사례에서 동영상 가운데 사용된 프린스 음악의 저작권자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UCC삭제를 요청하였는데, 미국법원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근거로 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문에서 미국법원은 저작권자들은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법원의 입장이 어떠할지 확신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정이용법리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8) 서울민사지방법원 2001.11.1 선고 2001카합1837결정

#### IV. 결론

UCC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은 모두 그 취지나 내용에 UCC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경시킨다거나 무시한 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여 UCC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UCC를 기존 콘텐츠와 너무 차별화시켜 취급하는 것으로서 UCC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UCC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존의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같고, 다만 그 제작주체나 목적, 제작방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비영리 목적으로 즐거움과 놀이로써 이전에는 단순 소비자에 불과하였던 계층에 의하여 제작된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저작권 제한 사유는 이미 현행 저작권법 시스템 속에 존속하고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시스템의 틀 내에서 UCC저작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미디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콘텐츠 이용 형태가 새로이 등장할 때마다 그를 반영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성문법 체계에서 기술·사회·문화의 변화에 지나치게 뒤쳐질 수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서 일반원칙으로서 ‘공정이용’ 법리를 도입하고 그 세부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따라 그 이행에 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저작재산권 일반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를 담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UCC 저작권 해결을 위한 주목할 일로 보여진다. 다만, 향후 공정이용 법리가 도입되더라도 이는 UCC 저작권 해결의 실마리일 뿐,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UCC 저작권 판단과 관련한 법원의 적극적 자세와 판례의 축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윤종수,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 이대회, “UCC 관련 저작권 쟁점”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한국인터넷진흥원, “UCC이용실태조사”, 2007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인터넷 이슈리포트”, 전자신문사, 2007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인터넷 이슈리포트”, 전자신문사, 200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백서”
- 정보통신부,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2007